

경조금지급규정

한국보험계리사회 내규 제8호
제 정 2016. 12. 17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보험계리사회 회원의 경조금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종류) 경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결혼축의금
2. 조의금

제3조(신청) ① 본 규정에 정하는 경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조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조금신청서(별지서식 제1호)를 작성하여 한국보험계리사회 사무국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증빙서류의 사전제출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급기준) 경조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단, 특별히 정상참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
제5조(청구기간) 본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3월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.

제6조(법령 및 타규정과의 관계) 본 규정에 의한 지급은 법령 및 기타규정에 의한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7조(지급범위 및 적용의 제한) ① 사단법인 한국보험계리사회의 대내외적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지급이 불가능 하거나 그 지급이 부당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을 정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.

② 전사업년도 또는 금사업년도 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

현행

경조금 지급기준			
경조구분		지급금액	비 고
본인 결혼	정회원	100,000	- 정회원의 경우 경조금 또는 화환 중 택일 가능
	준회원	70,000	
조사	정회원 / 준회원	본인	- 정회원/준회원 구분 없이 조기 (※단, 필요시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화 가능)
		부모(배우자 포함)	
		배우자	

경조금 지급기준

경조구분		지급금액	비 고	
본인 결혼	정회원	100,000	- 정회원의 경우 경조금 또는 회환 중 택일할 수 있다.	
	준회원	70,000		
조의	정 회 원	본인		500,000
		부모		100,000
		배우자		100,000
		배우자부모		100,000
	준 회 원	본인		350,000
		부모		70,000
		배우자		70,000
		배우자부모		70,000

<별지서식 제1호>

경조금 지급 신청서

- 다 음 -

신 청 인	소 속		성 명	
신 청 사 항	신 청 사 항	<input type="checkbox"/> 결혼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, 기타()		
	피 신 청 자	주민등록번호	- ***** (앞6자리 작성)	
		성 명		
		신청인과의 관계		
	신 청 내 용	<input type="checkbox"/> 화환 <input type="checkbox"/> 축의금 <input type="checkbox"/> 조화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증빙자료 첨부 : 청첩장(), 부고(), 기타()				
년 월 일				
신 청 자 : (인)				
확 인 자 : (인)				